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1. 26(목) 10:00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하며, 위탁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을 “시간제보육” 명칭 변경(안 제2조제7호, 제21조제1호)
 -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으로 함(안 제11조제1항)
 -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에서 “5년” 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변경
 - 1) “영유아지원” 을 “육아지원”, “체험학습실” 을 “실내놀이터” 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7호, 안 제22조의3, 안 별표 1)

2)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에서 체험학습실 금액을 “영유아 1인 1,000원” 에서 “영유아 1인 1,000원 이상 3,000원 이내” 로 변경(안 별표 1)

다.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규정 변경(안 제22조의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51조의2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6조의2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10. 16. ~ 2020. 11. 5.(20일 이상)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7호 및 제21조제1호는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 안 제17조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라 타당하게 적용되었으며
- 안 제22조의3과 별표 1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내놀이터 및 사용료 변경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